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The Review of Legal Regulations on Recall Service and Product Liability Law

성신여대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허 경 옥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 Kyungok Huh

〈목 차〉

Ⅰ. 서 론
Ⅱ. 리콜제도
Ⅲ. 제조물 책임법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wo laws protecting consumers' safety,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Legal Regulations on Recall Service.' Above all, this study defined 'Product Liability law' and 'Recall Regulation', and investigated the need for and importance of the laws. Second,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se laws were reviewed.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study considered how the damage and injury of consumers caused by defects in production would be compensated and under what conditions. Regarding the law to regulate Recall service, this study reviewed when and how producers must recall their products because of their defects. Finally, the directions for enacting these laws were suggested, and several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ir enactment were considere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enact these two raws in order to enhance consumer safety, consumer sovereignty, and consumer well-being.

Ⅰ. 서 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구조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어 왔다. 이 같은 경제구조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 제시된 소비자 7대 권리중 하나이며, 가장 기본적 권리인 소비자안전의 권리가 위협받아 왔다. 현대사회가 점차 고도화,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보편화, 광역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술개발로 새로운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 및 경제적 피해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안치호, 1993). 또한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와 더불어 저질 또는 결함 수입상품의 급증속에서 소비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김연화, 1994). 수입농산물의 경우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나 방부제가 검출되는 등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소비자피해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소비자안전을 위한 리콜제도의 적극적 실시와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도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상품의 결함이나 위해요소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또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리콜제도가 소비자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상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 소비자안전이 보장되며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제도의 효과적 운영은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되며 리콜제도는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적, 직접적 조치이므로 이 두 제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말해, 기업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하여서라도 제품결함 또는 소비자안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제도는 소비자피해 발생이후의 사후적 조치여서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콜제도를 통한 사전적 조치와 제조물책임제도를 통한 사후구제조치가 병행되어 질때 소비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실효를 거둘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제도를 통한 소비자보호정책은 소비자주의 실현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해 유용한 제도인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떤 것이며, 구체적 내용, 국내·외의 시행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효과적 시행방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리콜제도

리콜제도(recall)란 회수제라고도 불리우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결함상품의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을 스스로 공개하고 시정하는 제조자결함시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결함상품 공급자의 공개적, 자율적 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제조 후 또는 유통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위해한 제품을 제거, 회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리콜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리콜제도는 제품제조후 잠재적 위해, 또는 위험요인이 발생시 이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 시정하여 결함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결함있는 물건을 전량 수거해 보상, 수리, 교환해 주는 사전적 의미의 피해구제이며, 기업 또는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때 가장 효과적이다(최재희, 1996). 리콜을 실행할때는 결함내용, 결함관련 주의사항, 시정방법 등을 리콜실시 주체자(제조자 또는 사업자)가 우편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

리콜제도를 통해 제조자 및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리콜의 적극적 실시는 소비자안전확보와

소비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 그 가치가 있다.

1. 우리나라 리콜실시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리콜실시는 1991년부터 자동차부문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1992년 제정)에 규정된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1991년 제정)에 따른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자발적 리콜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리콜이 일부 실시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조차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고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들어 소비자피해급증과 더불어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들과 사회의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1996년 4월부터 소비자보호법과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리콜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문의 리콜실시 현황을 살펴보자. 1994년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회사에서 몇 건의 자동차리콜을 실시하였다.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 뒤 차축 베어링 마모가 빈번하자 해당차종 8천대를 회수, 수리해 주었고, 현대 "엑센트"의 경우 안전벨트 되감김 기능문제로 해당차량을 회수, 수리하여 주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엘란트라" DOHC차종에 대해 1996년 5월부터 1년간 리콜(무상부품교환 및 정비서비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1] 지금까지 실시된 대부분의 자동차리콜은 자발적 실시보다는 고객들이 일부기능의 결함을 묻고 항의하자, 해당차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고쳐주었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리콜실시 미흡함은 수출자동차의 미국시장에서의 리콜실시 현황으로 잘 알 수 있다.[2]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율적,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자동차리콜을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국의 소비자만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5개사 23대 차종대상으로 45회 리콜이 있었는데 수출차량중 63.9%, 내수차량은 2.9%가 리콜되는데 그쳤다(매일경제, 1996, 2월 28일). 세계 몇 번째의 자동차생산국이 자국내에서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안전 및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업계의 이 같은 관행은 외국자동차업계도 국내시장에서 국내소비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고 실제로 외국자동차업계들이 내수시장에서 애프터서비스 및 부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동차가 해외에서 리콜된 경우 내용보고를 의무화하고 이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도 리콜실시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산품의 경우 삼성전자에서 무선전화기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였는데, 1989년부터 1991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기술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전량 교체해 주었다. 최근에는 유공컴퓨터 앤커뮤니케이션(YC&C)사에서 국내처음으로 노트북 PC에 대해 1996년 7월 1일부터 리콜을 실시하였다.[3]

식품의 경우 해태제과 분말과자인 "빙글빙글 주렁

1) 대상차량은 1990년 10월 26일부터 1995년 2월 28일 사이에 생산, 판매된 엘란트라 1500cc, 1600cc DOHC로서 리콜해당차량은 약 9만대에 이른다. 리콜대상 부품은 배기구에 부착된 산소감지기로서 배기가스배출장치 결함이 인정되어, 차량보증기간, 해당부품의 불량유무와 관계없이 전국직영사업소, 지정정비공장, 신차점검코너에서 무료로 부품교환, 수리하기로하였다. 현대자동차는 리콜을 알리기 위해 일간지 통보, 소유자에게 통신문 발송, Hitel PC통신게제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중앙일보, 1996, 5월 5일).

2) 미국시장에서 수출자동차의 리콜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의 경우 "엘란트라"와 "엑셀" 94년형차종(600대)의 경우, ECAS(electronic clank angle censor) 결함으로 고온에서 엔진정지로 인한 사고위험이 제기되어, ECAS를 조사후 교체해 주었다. "엑셀" 88-89년형(270,000대)의 경우 히터시스템결함으로 엔진냉각수누출이 우려되어 히터시스템을 교체해 주었다. "소나타", 95년형(4,842대)의 경우 뒷문 왼편에 부착된 타이어공기압력 표기사항이 틀렸다고 제기되어 새로운 레벨을 제공하였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세피아" 94년형(6,945대)의 경우 스피드센서 기능이상으로 속도계 및 주행기록계작동 결함으로 스피드센서를 교체해 주었다.

3) YC&C는 1995년말부터 생산한 YN-5000제품을 리콜하는데 리콜대상제품은 제품중 일부가 과열된 시스템을 식히기 위한

주렁" 제품이 아동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자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들은 리콜실시를 요구하였고 결국 해태제과는 이 과자를 회수하였다. 1996년 1월 마산시 3살 여아가 이 제품을 사서 먹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제조업자인 해태제과에게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유통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자는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므로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최근 LG전자에서 96년 시판된 냉장고 "싱싱나라"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였다(조선일보, 1996년 8월 7일). 냉장고 성에제거장치 결함으로 96년 구입한 냉장고의 경우 인근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서 교환,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환불까지 해 주기로 하였다. 이번 LG전자의 리콜은 종전의 리콜이 대부분 수동적이고 비자발적 성격을 띤 것과는 달리 자율적이며 적극적 조치여서 그 의의가 있으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2. 외국의 리콜제도 운영 현황

리콜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미국 및 유럽 선진국, 일본 등의 경우 리콜을 철저히 하고 있다. 리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없이 긍정적이고, 소비과정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주의사항, 부실 표시사항까지 리콜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콜제는 크게 식의약품, 자동차, 일반공산품으로 구분하여 전담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소비자시대, 1996, 3월호). 식의약품의 경우 식의약품관리국(FDA)에서 1906년에 제정된 "식품·의약품법(FDA법)"에 근거하여 리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식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잠재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부실한 표시사항이나 주의사항의 경우도 리콜대상이 되는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황광로, 1996).

자동차의 경우, 1965년 Ralph Nader가 "Unsafe at any speed" 제목의 저서를 출판하면서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에 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고조된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Mayer, 1989). 1966년 제정된 "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에 근거하여 자동차리콜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자동차도 미국시장에서 여러번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일반공산품의 경우 1972년 제정된 "소비자제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잘 정착되어 왔고, 기업들도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를들면, 리콜 해당기업 사장이 TV에 직접 출연하여 리콜사실을 알리기도 하며, 신속하게 리콜에 응하는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줄 정도이니, 리콜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시행은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미국사회의 전체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73년 "소비생활용제품 안전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생활용제품에 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은 1969년부터 도입되어 자동차안전상 또는 공해방지상 문제가 있는 경우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최병록, 1996). 일본의 최근 리콜실시 실례를 살펴보면 1988년 마쯔시다 TV에서 발화화재가 발생하자, 이 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왔다(최병록, 1996). 그 이후 파급효과로 다른 많은 일본의 TV회사들은 TV를 회수하여 리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소비자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유는 그동안 일본에서는 제조물책임법(1995년 7월 시행)이나 집단소송법 등의 법규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리콜제도의 적극적 운영이 미비하였다(김정호, 1996).

냉각팬에서 소음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판매된 800대중 500대정도가 리콜대상이 된다(매일경제, 1996년 5월 22일).

3. 우리나라 리콜제도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안전을 위한 리콜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리콜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6년 2월 28일 재정경제원 주최로 우리나라 리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바, 1996년 4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모든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하였다. 1996년 7월에는 대기환경 관련 제품까지 리콜대상 품목으로 확대 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자동차와 모든 식품에 대해 리콜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위해요인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 모든 품목에 시행키로 하였다. 복지부는 식품의 경우 유제품, 식육가공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모든 식품품목을 리콜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긴급상황의 경우에만 위해제품을 회수토록 하고자 하는 방안이 초기에 검토되었으나 일반상황의 경우도 위해식품을 회수하도록 강화했다(매일경제, 1996년 4월 5일). 아파트 및 건축물에 대한 리콜제 도입 역시 검토중에 있어 소비자주권실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리콜제도와 관련한 세부적 내용, 즉 리콜대상품목, 시행과정, 법적 근거, 전담기관, 위해제품 선정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구체적인 리콜시행 대상품목, 시행과정 등의 구체적 절차는 재정경제원에서 리콜실시 세부규정을 마련 중이고 해당 각 부처에서 리콜과 관련한 기준과 고시 등을 제시 할 예정이다(매일경제, 1996년 4월 11일). 우리나라의 경우 리콜해당기관은 공산품의 경우 통상산업부,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농축산물은 농림수산부, 자동차 및 아파트 및 건축물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한다.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회수담당관이 해당품목의 폐기 등 회수절차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리콜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위해관련 모든 물품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게 되고, 식품의 경우'식품위생법',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관 부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위해제품선정 기준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병원, 경찰서 등에 안전사고 사례가 자주 보고된 제품을 우선적 감시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외에도 국민학교, 소방서, 행정관서 등을 통해 결함시정건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로 시판되는 제품 및 기존제품 모두 리콜대상이 되고, 공산품의 경우 가스보일러, 압력솥, 전기순간온수기, 세탁기, LP 가스용기, 녹즙기, 자전거 등이 자주 사고 및 피해가 보고되므로 이같은 제품의 경우 일차적 리콜대상 또는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 리콜대상이 되고, 안전기준에 부합되어도 자주 피해사고 발생시 리콜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준 사실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통해 접수되면 정부가 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통보, 스스로 결함을 시정토록 한다. 사업자가 리콜을 거부하거나, 시정결과가 미흡한 경우, 정부가 해당제품의 수거 및 파기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파기할 수 있다. 리콜실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위해정보평가 위원회를 열어 리콜실시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사업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판정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사업자, 소비자, 해당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재경원등에 통보하게 되고 주무부처는 리콜을 시행한다. 이때, 주무부처가 위해성여부를 다시 평가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자동차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자동차성능 시험검사소에, 공산품은 통산산업부가 국립기술 품질원에, 식품은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안전본부에 시험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부처가 리콜결정시 사업자는 리콜실시 계획서를 제출후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계획서에는 리콜을 알리는 광고문안, 개별통지, 애프터서비스 체계, 교환시기 및 장소, 인력보충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는 리콜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복지부 시행방안은 강제 회수명령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

와 1개이상의 전국방송에 공표문을 싣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매일경제, 1996년, 4월 5일). 사업자는 리콜완료후 리콜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주무부처의 리콜결정에 반발시 강제리콜을 명령하고, 또한 리콜이 미흡한 경우는 추가 리콜 명령을 요구한다. 명령위반시 형사상 책임과 벌금을 물린다. 예를들면, 식품 리콜의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공산품 등 물품 및 용역의 안전기준위반 또는 시정명령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최재희, 1996).

4. 리콜제도 실시의 문제점과 효과적 시행 방안

우리나라에서 리콜실시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여 소비자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리콜제도 도입시 어려운점을 먼저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정책의 일환인 리콜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리콜제도 실시의 미흡함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충분치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리콜은 대부분 비자발적이며 소극적 형태를 띠어 왔다. 예를들면, 현대자동차 엘란트라차종의 최근 리콜도 환경부의 오염기준치통고로 인한 피동적 조치였다.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차량의 리콜, 해태제과의 분말과자 리콜 역시 고객의 항의, 언론의 보도,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 등 문제발생후 비자율적으로 실시하였다.

기업들이 리콜을 꺼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자사제품의 결함을 솔직히 시인하기도 어렵고 시인해도 믿어줄지가 의문이라고 한다(중앙일보, 1995년 4월 10일). 리콜실시에 대한 사업자의 기피는 리콜제품은 곧 불량품이라는 인식을 받으므로 리콜이 회사의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리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선진국가의 경우 리콜을 오히려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결함상품을 미리 회수해,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소홀히하여 후일 대형사고 발생시 거액의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리콜을 적극적으로 활용, 실시하여야 함을 기업이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리콜제도의 비효율적 시행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위해성 평가체제 및 사후관리, 감독, 전담조직의 미비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리콜대상품목과 안전기준설정의 미비, 관련부처의 준비 미흡으로 효과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리콜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키 위한 예방적 차원의 리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김정호, 1996).

셋째, 리콜제도의 운영은 기업, 특히 영세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리콜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비용, 품질관리비용, 제품회수로 인한 비용이 증가된다. 생산, 관리, 사후회수를 위한 비용증가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중소기업은 품질관리 및 소비자안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함으로 리콜제도의 적극적 도입은 중소기업 및 제조업분야에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존립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수출국에서의 리콜경험 등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리콜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비용증가가 중소기업 및 제조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영세제조업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리콜실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리콜대상품목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리콜제도는 이미 19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의욕만 앞선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키 위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이 제도의 효과적 달성은 시급한 문제이다. 리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안전기준과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 또는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구가 필요하며 보다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의 경우 원료, 제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 중점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김봉익, 1990). 각종 식품위생 기준과 규격도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서 통상마찰을 피하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또한, 리콜제도운영의 활성화는 결함상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김정호, 1996). 정부는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외에도 소비자와 밀접한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피해 및 안전과 관련한 고발을 받기로 하였다.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제는 위해정보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다.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종합병원, 초등학교 등 여러 기관으로 들어오는 위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평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해식품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실증적 기초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및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부족, 그리고 잦은 부서이동으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정희, 1991). 따라서 필요한 예산확보와, 소비생활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 전문기구가 필요하다.[4]

둘째,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기업의 수동적이고 비자발적 태도가 리콜의 효과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리콜제도의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시급하다. 리콜실시는 기업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안전사고후 거액의 피해보상책임을 축소화하기 위하여서라도 예방적 차원의 리콜실시는 필수적임을 기업은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리콜제도는 소비자안전를 위한 즉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리콜제도의 활성화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한데 특히 소비자의이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선행되어야 겠다. 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언론, 소비자관련 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Ⅲ. 제조물책임법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현대산업사회구조에서 소비자피해는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그 피해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감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화, 유통과정의 복잡화등으로 소비자피해의 원인규명이 어렵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기술, 정보측면에서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할 때 소비자피해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소비자피해구제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안치호, 1993).

우리나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제정되었고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1996년에는 소비자피해와 관련한 규정과 환불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강화하는 4차개정을 하였다.[5] 지금까지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

4) 정부에서는 최근 리콜관리 전문기관으로 식품의약청, 중소기업청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매일경제, 1996년 4월 11일).

5) 재경원은 1996년 4월 1일부터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상품권관련업(상품권의 사용 위 및 환불), 해외여행, 자동차 견인, 콘도,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추가 개정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96년 4월 22일; 한

한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란 어려웠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법상의 규정과 별도로, 제조자의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용이하게 구제하고, 나아가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란 상품에 결함이 있으면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자가 책임을 지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다시말해, 제품의 결함으로 야기된 재산상의 손해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물건을 만들때부터 소비할때까지 관련 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김성천(1992)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입법에 관한 연구에서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가장 시급한 소비자문제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대형사고의 빈발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으며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의 도입과 시행은 세계적 경향이며, WTO체제 전개와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가입추진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법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이은영, 1995).

제조물책임법 도입은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자국의 소비자안전과 피해구제를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외국회사들이 이 법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선진국에는 안전도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후진국에는 위험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마찬가지로, 국내기업이 수출제품의 경우는 수출국의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맞추고, 내수용은 안전성면에서 그 보다 못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을 육성키위해 이 법의 도입과 시행을 미룬다면, 결국 외국회사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고조, 소비자피해사례의 급증, 기업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연구검토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1997년초 또는 1997년말 최종안을 입법할 전망이다. 이 법이 발효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빠르면 98년도부터 시행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또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상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여, 즉 민사소송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 피해원인과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함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피해청구상의 어려움(시간, 비용)으로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소비자는 제조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 기업도 결함제조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상품의 결함 또는 제조자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우기,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거친 제품의 경우 결함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소비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는 결함때문에 당한 피해만 입증하면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상품결함을 개괄적으로 입증만 하면, 그리고 피해입증이 되면, 손쉽게 제조자에게 책임추궁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일차적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

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업이나 레저용역업의 경우, 시설이 고장나거나 정원초과로 소비자가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할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거나 대체시설물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들어, 테니스장에 샤워시설 또는 코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계약한 경우도 해당된다. 자동차 견인료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징수한 경우는 차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상품권과 관련한 경우는 액면가 60%이상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환불가능하며, 세일기간에도 사용가능하다(소비자시대, 1996년 6월호 부록참조).

적 예방조치는 아니나, 이 제도의 활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보장될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리콜제도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권리와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거액의 소비자피해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조과정, 표시사항, 검사과정에서 보다 제품의 안전성에 신경을 쓸 것이므로 결국 이 법은 리콜제도를 활성화시켜 제품의 안전성확보, 소비자안전에 큰 기능을 할 것이다. Greer (1992)도 제조물책임법시행은 소비자보호운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서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 법의 이해를 돕고자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실시 현황,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 도입의 문제점과 효과적 수행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자.

1.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운영실태

제조물책임법이 정착된 나라는 현재 약 25개국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일본, 브라질, 중국, 폴란드, 러시아, 필리핀 등도 이미 이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6] 이중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서 1950년대 후반, 또는 1960년대 초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결함요건하에 엄격책임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지영, 1992). 196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을 채택한 이후 개별주들도 1970년대에는 대부분 채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 법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전화번호부 손해배상 관련 전문변호사들의 광고에서 잘 알 수 있다.[7] 뿐만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문맹자를 위한 인공음성으로 제품사용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입체적 경고표시까지 하고 있다(조선일보, 1996년, 2월 2일). 이 같은 예에서 소비자안전과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미국기업들의 적극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이 법에 의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은 실증적 예를 살펴보면, 1987년 Tylenol약에 독극물이 주입되어 복용자가 사망하여 거액의 배상금 지불을 하였고, 그후 Tylenol회사는 자발적으로 안전뚜껑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또한, 커피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화상을 당한 경우,[8] 삼륜차가 뒤집어 진 사례,[9] 1회용 라이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화상[10]등에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었다. 이 같이 미국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자 각종 개인상해관련 소송판례를 수집, 분석하여 어떤 사건 발생시 소송결과(예 : 피해보상가능 액수)를 예측해 주는 곳도 설립되는 등 활기를 띄었다.[11]

6)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시행년도를 살펴보면 i)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988), ii) 룩셈부르크, 덴마크, 포르투갈 (1989), iii)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1991), iv) 아이슬란드, 스위스, 브라질, 필리핀, 오스트리알리아 (1992), v) 중국, 스웨덴 (1993), vi) 일본 (1995) 이다(강창경, 최병록, 박희주, 1994: 재인용).

7) 전화번호부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911(응급전화)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전화하세요. 배상 못 받으면 수임료 안 받습니다".

8) NewMaxico에 사는 79세 노파가 맥도널드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산뒤 부주의로 커피를 다리에 쏟아 3도화상을 입었다. 노인은 소송을 제기, 주 법원 배심원들은 맥도널드사가 다른 가게들 보다 온도가 5-10도 높은 상태로 커피를 팔아 이같은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20만dollar를 지불하고(원고의 과실도 20% 인정),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 270만dollar를 지불토록 평결을 내림(한국일보, 1995년 9월 6일 재인용).

9) Oregan주 법원은 전지형 삼륜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머리에 중상을 입은 남자에게 제작사인 Honda 자동차가 91만9천dollar를 배상하고 또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백만dollar의 징벌배상금을 부과시켰다(한국일보, 1995년 9월 6일 재인용).

10) 어린이가 1회용 라이터를 갖고 놀다가 화상을 입자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였고, 이후 라이터회사는 라이터에 안전잠금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한국일보, 1995년 9월 6일 재인용).

미국에서 소비자피해보상권이 점차 강화되자 1976년과 1985년에 소송비용과 배상금액이 급증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였다.[12] 또한 배상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보험인수거부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 제도의 위기까지 경험하였다(이지영, 1992). 이 같이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미국 개별주에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최고액을 설정하여 배상액을 제한하고 재판외분쟁처리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②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EC)[13] 거의 모든 국가들도 이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기본적 목표가 유럽지역내의 상품, 노동력, 거주 및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 즉 자유무역이므로 이 지역내의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통일적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소비자보호정책도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Greer, 1992). 이 같은 필요성하에 1968년부터 회원국의 제조물책임원칙 조정과 차이를 시정키 위한 작업이 수차례 진행되어오다가 1985년 7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directive)이 채택되어 거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이 지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이지영, 1992; 강창경, 최병록, & 박희주, 1994). 공동지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쟁조건의 동일화였다. 각국간에 제조물책임법상에 차이가 있다면, 제조업자의 제품비용상에 차이가 있게 되며, 유럽국가내에서 제품유통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어 통합을 통한 자유경제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장통합의 차원에서 이 법의 통일이 필요하였고 제조물책임 원칙을 조정하여 이 지침이 제정된 것이다(Greer, 1992; 이지영, 1992). 물론, 각 국가간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세부적 내용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 원칙은 통일하고 있다.

③ 일본

일본은 선진국중에서는 가장 늦게 이 법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업계의 심한 반발로 의회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점차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보편화되자 이 법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갔다.[14] 또한, 1980년대이후 세계 각국이 이 법을 도입하자, 세계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최근 몇년전 부터 일본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94년 이 법을 제정, 95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1) Pensylvenia주에 있는 배심평결위원회(jury verdict research)는 59년 설립이후 각종 개인상해관련 소송판례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송평가 software를 개발하여 어떤 사건 발생시 자료를 입력하여 소송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예; 만약, 40대 남자가 잔디 깍다가 기계조작시 발을 다쳤다. 이 경우 부상자의 직업, 부상부위 정도, 치료비 등의 세부자료 입력후 예상배상금액(57만 5천 dollar)을 산정할 수 있다(한국일보, 1995년 9월 6일: 재인용).

12) 연간 소비자피해 소송건수는 약 9만에서 10만건에 이른다고 하며, 총 배상금액은 년간 평균 약 19억원이라고 한다(한국일보, 1995년, 9월 6일).

13)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호칭문제는 1993년 Maas-tricht 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정식 발족하자, 일반적으로는 유럽연합으로 호칭한다. 그러나 경제, 통상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률적 행위를 할때는 유럽공동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문정숙, 1994). 1995년 1월 1일 현재 EU 가입국은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14) 일본에서는 주부가 머리카락 염색약 사용중 염색제가 눈에 들어가 시력을 해친 사건이 발생하자 거액의 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었다. 1991년 주부가 머리카락 염색약 사용중 염색제가 눈에 들어가 시력을 해친 사건이 발생하자 이 주부는 제조자를 상대로 1350만 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였다. 판결은 사업자는 눈, 코, 입등으로 흘러들어가 위해 할 우려가 있는 성분을 염색약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부득이 한 경우 최소한 제품에 경고표시라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외국 제조물책임법의 구체적 내용

각 나라마다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적용대상, 결함의 정의, 책임소재, 면책조항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몇몇 나라의 법규내용에 관한 요약은 〈표 1〉에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책임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 가공된 모든 동산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산이란 공업제조물, 가공품을 지칭한다(강창성, 최병록, & 박희주, 1994). 그러나, 비영리목적의 제조물, 부동산, 서비스, 제조 또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물책임대상 제외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인 농어민의 배상능력 부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한 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축산물 및 미가공자연산물은 제외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 및 어업 실정을 고려할때 바람직하다.

책임대상과 관련하여 고려할 것은 부동산으로서의 주택과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이다. 미국에서는 주택건설업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전기의 경우도 대상품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지침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제조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전기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에너지 등은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등 대량생산으로 인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요자인 소비자가 결함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감을 반영하여 분양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는 책임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법규가 될 것이다. 이은영(1995)은 부동산의 결함에 대해선 이 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서 규제함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전기, 가스 등의 품목도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겠다. 미국 및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들 품목이 책임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스와 관련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고 또 그 피해가 엄청남으로 반드시 책임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결함의 정의 및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될때, 결함이라 하고 적합성이 결여될 때는 하자라 한다.[15] 결함은 안전과 관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함으로 본다. 따라서 결함의 유무는 절대적 의미보다 상대적 의미의 개념이다(권오승, 1994). 예를들어, 같은 제품이라도 성인용인가 유아용인가에 따라 허용가능한 안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안전과 관련한 표시 또는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안전성의 정도, 위험의 정도, 상품의 유통기간, 현재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함의 유무를 결정한다(권오승, 1994). 다시 말해, 제조물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 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품사용과 관련한 사고손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원칙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는 무책임원칙, 과실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원칙, 기업의 무과실을 인정하되 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원칙, 기업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 엄격책임원칙 등이 있다(신도철, 1992).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책임을 결정하지 않고 상품에 결함이 있는가를 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많은 국가에서 제조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엄격책임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15) 예를들어, 막 출고한 차가 타이어가 3개면 하자가 있는 것이고, 4개이나 보통속도에서 주행중 타이어가 폭발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결함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일본과 유럽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란 몹시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어려운 점을 보완키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감정자가 제조장소(공장)에 들어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영미법 국가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이은영, 1995).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자 및 기업이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을 검토중에 있다.

③ 책임대상자

일차적으로 제품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결함상품의 제조자가 책임대상자이다. EC지침에서도 동산으로서의 완제품, 부품, 원재료의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되어있다(이지영, 1992). 또한, 많은 나라에서, 제품 또는 상표에 제조자로 명시 또는 표시된 자도 책임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최종제조물의 결함이 부품이나 원재료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부품, 원재료 제공자도 연대책임대상이 된다(이지영, 1992). 주문자생산(OEM)에 의한 경우 진정한 제조자도 책임부담을 갖게 된다(최병록, 1994).

현대소비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유통에 의거하고 있고 유통과정이 복잡하다. 상품이 제조에서 소비까지 수없이 많은 경로를 거치므로 어느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책임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시장개방과 수입급증으로 수입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김연화, 1994). 수입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수입업자도 책임대상자로 하고 있다. EC지침에서도 수입업자가 책임대상이 되며, 수입업자를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 중간상인도 책임대상으로 하고 있다(연기연, 1994). 그러므로, 책임대상자는 제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도 법 제정시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의 경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책임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국가에서 판매업자의 경우는 직접 제조 또는 설계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본적으로는 책임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판매업자도 엄격히 책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점과 소비자안전을 달성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판매업자도 책임대상자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판매자가 영세업자인점을 반영하여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보충적인 의미의 책임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주목 할 만한 것은 미국의 경우 결함상품 제조자인 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의 의무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의 기본적 취지인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유사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책임을 두고 있어 엄격한 책임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예외조항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면책사유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경우, 결함의 원인을 제조자에게 돌릴 수 없는 경우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최병록, 1995). 또한, 제조자가 불분명한 경우, 제조자가 당해상품을 유통시키지 않았고, 유통시켰을 경우 그 당시 결함이 없었던 경우, 제조물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하여 생긴 경우 등은 면책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품이나 원재료 공급자의 경우 공급한 부품과 원재료 결함이 주문자의 설계와 지시에 기인한 경우는 유럽지침에서나 일본법에서 공급자에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최병록, 1994). 우리나라에서도 면책사유조항을 명확히하여 이 법으로 제조자 및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겠다.

책임기간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에서 손해발생 또는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유통시킨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의 피해책임은 지지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멸 시효를 짧게 하여 기업의 활동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이외에도 "개발위험항변" 이라 해서 제조 또는 유통 당시의 지식 또는 기술로 해당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을때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있다. 유럽지침에서는 이 문제를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이 항변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많은 국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인한 일반적 면책사항과 부품과 원재료 결함이 주문자의 설계와 지시에 기인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등 제조자책임을 가볍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개발위험항변"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은영, 199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수준을 고려할때, 전면적으로 이 항변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이 항변을 인정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취지가 달성되지 않으므로 인정범위를 최소화하고 상품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이은영, 1995). 예를들면, 인체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경우는 이 항변을 부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제조물책임법도입의 문제점과 효과적 시행방안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들면, 보일러 배출가스 질식사고, 녹즙기 사용중 손가락 절단사고, 엘레베이터 사고, 실리콘 유방수술 부작용 사건, 장난감 총기 눈부상 사건, 불량건강식품 부작용, 외국 수입상품의 저급, 불량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요인들이 많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을 도입하지 못 했고, 최근에 와서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 즉,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이 법이 도입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 제조물책임예방을 위한 제품설계, 제조, 경고표시, 안전설비 등 안전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비용,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비용, 소송과 관련한 부대비용(예 : 전문변호사 고용, 증빙서류 확보)이 상품생산원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선진국에 수출경험이 있고 선진국의 이 법에 대응하는 제품을 만들어 왔으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품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안전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은 결국 생산활동의 위축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업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신제품의 경우 제품안전과 무결함입증이 보다 요구됨으로 입증을 위한 비용 등과 관련하여 개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다. 빈번한 소송 및 과도한 배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소비자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으로 업계와 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수용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중앙일보, 1996년, 3월18일). 실제로 이 법을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이 법을 악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16] 이 법의 시초인 미국 및 유럽에서도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빈발한 소송을 줄이고자 배상금상한선 설정,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최병록 외, 1993).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이 법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제정과

16) 수년전 콜라캔 속에 주사바늘이 들어 있다고 거짓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물의를 빚었고, 오클라호마시티청사 폭파에 사용된 폭탄을 만드는데 비료가 들어갔다고 주장, 피해자들이 비료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기도 하였다.

시행은 오래전부터 세계적 추세이며, 최근에는 중국, 필리핀, 브라질,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이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WTO체제와 급속한 개방화시대에 더 이상 자국의 소비자안전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비자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및 판매자들이 안전상품을 제조, 관리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국제화시대에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육성키 위해 소비자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견해이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법의 도입은 장기적 안목에서 필수적이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기정 사실로 할때, 제정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제조자의 기업활동촉진이라는 서로 상충된 목적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김성천, 1992).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은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상품을 생산하게 되는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적 취지가 달성되기 위한 효과적 시행방안을 검토해 보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및 구조, 기업환경, 중소기업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어려운점 또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우리실정에 맞는 법을 도입코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각국의 입법내용이 어느정도는 공통적 이라 해도 각국마다의 고유사정이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기본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에 적합한 입법과 정착이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입법시기, 입법내용, 향후 대책, 도입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겠다(정병식, 1996).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충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어 우리실정에 맞는 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되어야 함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제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어떻게 감안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규칙 또는 특별조항을 두어 제조물책임법 도입시 문제점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품출하시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 결함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개발위험항변조항", 제조업자가 불명확한 경우 판매 및 임대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외국의 경우 3-10년)를 짧게 하는 조항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한, 중소기업보호와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위하여 손해배상최고액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제조물책임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비자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정책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생산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공급자위주의 공급형이었으므로, 소비자지향적인 소비자보호행정을 지향하도록 해야한다(강성진, 1994; 강성진외 1994; 신원득 & 두성규, 1994; 이종인, 1994). 이 법의 도입과정에 소비자들,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소액피해사건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시간과 비용상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 할 것인가,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인가 등 소비자가 손쉽고 간편하게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겠다. 소액재판의 경우 필요하다면 무료 소비자전문 변호사인단을 구성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관련 단체에 소송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두어 소비자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 법을 활용하고 소비자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소비자와 관련한 문제를 통일적으로 전담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이기춘 외, 1994).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87년 개원하여 그 이전보다는 효과적인 소비자행정을 펴오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 관련 각 부처에서 소비자문제를 일관성없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부서간 이

동을 자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끝으로, 이 법의 기본적 취지가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므로 개별 소비자들의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법이 도입되지 않은 이 싯점에서 소비자들은 이 법에 대해 생소할 뿐만아니라 제정되어도 실제적으로 이 법의 효과적 활용은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입후에는 이 법 활용과정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소비자교육을 위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적극적 활동, 언론의 홍보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 법의 기본적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우리사회에 적합한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하기 위한 정부, 정당, 법조계, 학계,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리콜제도는 소비자안전을 우선적 가치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이 두 제도는 소비자권리 및 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소비자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또는 리콜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는 그 나라의 소비자주의 실현의 척도가 될 수 있다(Greer, 1992).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결수단이므로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결함제품에 관한 사전조치인 리콜제도가 함께 도입, 운영될때,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 시행되면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라도 사업자들이 스스로 리콜을 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소비자안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도입시 문제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체이므로 중소기업이 도산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는 방향으로 이 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겠다. 대응책으로서 제조업자 및 기업의 책임부담을 분산시키고 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의 정착과 활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겠다. 1996년 4월부터 리콜제가 모든 공산품에 확대 적용됨으로서 리콜보험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리콜 및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은 해외수출품 및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보험시장이 규모면에서도 부진하였을 뿐만아니라 보험업무 및 영업기법도 낮았다(매일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 주요 보험사들은 리콜시장의 규모와 제조물책임배상과 관련하여 위험예측, 상품개발, 보험료 산출근거 등 영업기술을 축적하여 책임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리콜제와 앞으로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한 사보험 이외에도 보증계약, 공탁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겠다. 소비자보호라는 기본적 취지와 제조자의 기업활동 및 책임보험시장의 기능활성화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김성천, 1992).

둘째,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비용증가와 거액의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최고배상액 설정과 소송 외적 피해구제 방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온 만큼, 이 같은 보완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소액피해, 소송의 긴 시간과 경비 등을 고려할때, 소송 외적 해결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 제3자에 의한 조정, 중재 등이 병행된다면 많은 소송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리콜제도가 올해부터 도입,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 자

율적 리콜실시와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겠다. 기업은 과거 기업중심적 태도에서 탈피해, 보다 상품의 안전성에 신경을 쓰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리콜은 회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리콜실시는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철저한 관리로 인식되어 오히려 신뢰감과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제도는 기업의 부담이 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론 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리콜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제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행, 도입했다는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성과있게 시행할 것인가가 중요함으로 각 정부기관들이 서로 유기적, 상호협력체제로 리콜제도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식적이고 비자율적인 리콜은 실효를 거둘수 없으므로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리콜실시를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예산확보, 인원확충 및 전문가 양성, 관리 감독의 철저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리콜시행결과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 사례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이 두 제도의 기본적 취지가 달성되고 또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이 두 제도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이미 시행, 도입단계에 있는 리콜제도에 대해 기업, 정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언론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몇 년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자칫 소송으로 떼 돈을 벌겠다는 부도덕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잘못된 제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도록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및 관련 연구자들을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반문제 지원방안(예 : 변호사 알선, 소송과정에 대한 기초교육)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겠다.

결국,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리콜제도와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정책은 '소비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소비자단체, 기업, 그리고 정부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성진 (1994). 소비자지향적 행정조직개편의 방향, 소비자문제연구, 14, 66-83.
2) 강성진, 손수진 & 김인숙 (1994). 소비자지향적 행정체계 연구, 한국 소비자보호원.
3) 강창경, 최병록 & 박희주 (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4) 권오승 (1994).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5) 김봉익 (1990). 90년도 소비자보호시책 추진방향, 소비생활연구, 5, 56-67.
6) 김성천 (1992).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9, 10-19.
7) 김연화 (1994). 국제화시대의 소비자안전의식 재고-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문제연구, 13, 86-96.
8) 김정호 (1996). 우리나라의 리콜 도입 방안에 대하여. 소비자시대, 1996년 3월호, 15.
9) 문정숙 (1994). 유럽연합(EU)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13, 16-35.
10) 서정희 (1991).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행정의 역할과 기능. 소비생활연구, 7, 57-66.
11) 신도철 (1992). 소비제품 안전성의 법경제학-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 91-118.

12) 신원득 & 두성규 (1994). 소비자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31-51.
13) 안치호 (1993). 소비자문제의 발생배경과 그 전망. 소비생활연구, 11, 24-33.
14) 연기영 (1994). 제조물책임의 성립과 입법동향. 소비자문제연구, 14, 1-20.
15) 이기춘 외 15 인 (1994). 소비자학의 이해. 학현사. 236-252.
16) 이기춘 & 김외숙 (1995). 소비자보호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7) 이종인 (1994). 우리나라 정부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14, 84-94.
18) 이지영 (1992).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주요논점. 소비생활연구, 10, 60-71.
19) 이은영 (1995). 제조물책임법제정의 필요성, 월간 소비자, 7-8월호, 170, 30-33.
20) 장용진 (1995). 제조물책임에 대한 기업의 입장, 월간 소비자, 170, 7-8월호, 33-35.
21) 정병식 (1996). 소비자보호제도의 현황, 월간 소비자, 1-2월호, 42-45.
22) 지수현 (1994). 제조물책임보험. 소비자문제연구, 14, 52-65.
23) 채서일 (1995). 개방화시대의 소비자문제와 정책-소비자, 기업, 정부의 역할, 한국소비자학회 1995년도 총회 및 학술대회.
24) 최병록 (1993). 소비자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소비생활연구, 11, 68-81.
25) 최병록 (1994).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소비자문제연구, 14, 33-51.
26) 최병록 (1995).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 월간 소비자, 170, 7-8월호, 36-42.
27) 최병록 (1996). 일본의 리콜실태를 알아본다. 소비자시대, 1996년, 3월호, 13.
28) 최재희 (1996). 리콜: 제품결함, 솔직한 고백이 소비자 신뢰 높인다. 소비자시대, 1996년 3월호, 11-15.
29) 황광로 (1996). 미국의 리콜 실태를 알아본다. 소비자시대, 1996년 3월호, 12.
30) Greer, T. V. (1992). Prouduct liability in the European Community: The legislative Histor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6, 1,159-176
31) Mayer, R. N. (1989). The consumer Movement: Guardians of the marketplace. Twayne Pub.

〈표 1〉 각 나라의 제조물책임법 내용

국 가	결함의 대상	구체적 책임대상의 예	책임대상범위
미 국[17]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모든 제품	모든 동산(가공·미가공 포함) 부동산, 전기	완성품, 부품, 표시제조자 도매상, 소매상, 유통업자 수입업자
EC지침[18]	1차농산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	일체의 동산 전기 미가공 농수축산물 제외[19]	완성품, 부품, 표시제조자 수입업자, 공급자
일 본	제조가공된 동산	제조·가공된 동산 미제조·미가공 동산 제외 부동산, 전기 제외	실질적 제조자 판매자와 공급자 제외

국 가	책임원칙	책임한도액	책임기간	면책사항
미 국	무과실책임 엄격책임	없 음	제품인도받고 10년	개발위험항변 불가변하게 위험한 제품 피해자측의 행위(기여과실, 위험인수, 오용)
EC지침	무과실책임	없 음[20]	10년	개발위험항변[21] 제조자가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제조물 유통당시 무결함 비영리 목적의 제조물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
일 본	무과실책임	없 음	10년	개발위험항변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

17) 각 주마다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음.

18) 각 나라마다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음.

19) 예외적으로, 룩셈브르크, 프랑스, 스페인은 농축산물의 경우도 책임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음.

20) 예외적으로, 그리스, 포르투칼, 독일, 스페인은 최고한도액이 있음.

21) 예외적으로, 룩셈브르크의 경우 개발위험항변을 인정치 않음.